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의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9
----------	-------

제출년월일 : 2003. 11. 1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사용료 감면규정중, 일부감면 사항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감면이 가능하도록 “50퍼센트 이내로 감면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 나. 감면규정중 보완사항 및 일부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의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의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시”를 “도·시”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492
입 안 자	환경보호과장	백 철 현
	환경시설담당	박 완 제
	담 당 자	이 성 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u>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u>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 국가 또는 <u>시가</u> 주최하는 행사·경기 2.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낙하리, 내포리 3년이상 거주자) 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4. <u>기타 체육진흥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u>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와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 -----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u>도·시가</u> 주최하는 행사·경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u> ② (삭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 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용료 감면규정 중 일부감면 사항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도록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 감면규정 중 보완사항 및 이루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부분
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안 제5조제1항 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사용료의 일부 감면규정을 전액감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국가 또는 도와 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와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사용료의 100%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음.
- 제3호와 제4호에서는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와 경기 그리고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당초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필요에 따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그러나 동 사항은 시장에게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각급 단체나 기관에서 공익적인 행사개최를 사유로 사용료의 면제를 요구해 올 경우 재량권의 남용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사용료수입의 감소가 우려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地方自治法》[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127條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第130條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허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